

대 법 원

제 1 부

판 결

사 건 2020재다334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
원고(재심원고) 1. A
2. B
피고(재심피고)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0. 3. 2. 선고 2019재다12617 판결
판 결 선 고 2020. 7. 29.

주 문

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재심소송비용은 원고(재심원고)들이 부담한다.

이 유

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재심대상판결에 원고(재심원고)들이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.

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

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	대법관	박정화
-----	-----	-----

주심	대법관	권순일
----	-----	-----

	대법관	이기택
--	-----	-----

	대법관	김선수
--	-----	-----